

# 정정신고(보고)

2022년 1월 20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04.17

3. 정정사유

- 법,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1. 10. 21 시행)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</u>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<u>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</u> 여부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-----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 -.	① -----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----- -.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 ②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 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(투자신탁보)	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
수)	<p>② -----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하고 -----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② -----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하고 -----.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신설</u>) 3. ~ 5. (생략)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부 칙	(신 설)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